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과도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

■ 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202167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1
IV. 총괄 검토의견	4
V. 주요 법안별 검토의견	7
1. 벌칙에서 과태료 규정으로의 전환	7
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 제1조)	7
나.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2조)	10
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3조)	13
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 제7조)	15
2. 형량 조정	18
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4조)	18
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 제6조)	20

3. 행정제재를 한 이후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22
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 제5조)	22

I. 제안경위

2024년 7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2024년 7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1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선박안전법」의 개정(안 제2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선원법」의 개정(안 제3조)

선원명부, 선원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의 개정(안 제4조)

임원 등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함.

마.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5조)

- 1) 관리기관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

2) 관리기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 6조)

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시설 안전점검 또는 수중레저활동구역의 기상 상태 확인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징역형을 폐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함.

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7조)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IV. 총괄 검토의견

□ 정부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경제 형벌 합리화 계획을 발표하고, '22년 7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출범하여 경제 형벌규정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안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정안은 그 유형에 따라 ① 기존의 벌칙 조항을 과태료 조항으로 개정, ② 형량 조정, ③ 선 행정제재, 후 형벌부과 방식으로 개정 등 경제 형벌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음.

□ 개정안과 같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형벌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완화하면 경제 형벌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제재 효과를 유지하면서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는 긍정적인 기대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7개 법안을 일괄적으로 입법하는 방안과, 개별 법률로 구분하여 독자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하는 방안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할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개정안 주요내용 - 과태료 전환

법 률	개정내용	분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대상)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항만 시설보안료를 징수한 자 (기존) 5백만원 이하 벌금 → (변경) 3백만원 이하 과태료	①비범죄화 (과태료 전환)
선박안전법	(대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 또는 사업장 지도· 감독에 필요한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방해 또는 기 피한 자 (기존) 1천만원 이하 벌금 → (변경) 5백만원 이하 과태료	①비범죄화 (과태료 전환)
선원법	(대상) 선원명부, 선원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 대장, 재해보상 등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 한 선박소유자 (기존) 5백만원 이하 벌금 → (변경) 5백만원 이하 과태료	①비범죄화 (과태료 전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 자료제출명령을 불이행한 자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변경) 5백만원 이하 과태료	①비범죄화 (과태료 전환)

[표] 개정안 주요내용 - 형량 조정

법 률	개정내용	분류
선주상호보험조합 법	(대상)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조합의 임원 및 청 산인 등 (기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변경) 10년 이하 징역(하한삭제) 또는 3천만원 이 하 벌금	②형량 조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대상) 시설 안전점검 의무 등을 미이행한 수중 레저사업자 (기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 (변경) 징역형 폐지, 벌금형만 부과 가능	②형량 조정

[표] 개정안 주요내용 - 선 행정제재, 후 형벌부과

법 률	개정내용	분류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대상) 관리기관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변경) 최초 위반 시 과태료(2천만원), 2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先행정제재 後형벌부과
	(대상) 부실관련자에 대한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변경)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비범죄화 (과태료 전환)

IV. 주요 법안별 검토의견

1. 벌칙에서 과태료 규정으로의 전환

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 제1조)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으나 앞으로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7. 제42조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변경된 요율을 포함한다)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한 자	제49조(벌칙) ----- ----- -----.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2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6. (생략) <신 설>	제5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26. (현행과 같음) 27. 제42조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

③ (생 략)	<u>보안료의 징수요율(변경된 요율 을 포함한다)에 대한 승인을 받 지 아니하고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한 자</u> ③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 제49조제7호에 따르면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경제 형벌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요율에 대한 승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현행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이와 관련하여 「공항시설법¹⁾」에서 공항·비행장 등의 사용료를 신고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승인한 사용료와 다르게 사용료를 받은 자에 대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유사 입법례를 찾아볼 수 있음.

1) 「공항시설법」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2조제2항 또는 제5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신고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승인한 사용료와 다르게 사용료를 받은 자

□ 한편, 개정안은 항만시설보안료 승인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면서 과태료 상한도 5백만원(벌금 기준)에서 3백만원으로 하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입장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현행법상 항만 시설 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등 다른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와의 형평성²⁾ 을 고려할 때 3백만원 이하로 조정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2) [유사 과태료 부과 유형 (제52조)]

과태료 조항	구성요건	금액
제52조제2항	- 항만시설이용자가 법상 정하는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등 -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총괄보안책임자를 지정하였으나 미통보한 경우 -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보안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	3백만원 이하

나.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2조)

-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 또는 사업장의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으나 앞으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7. <u>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 8. (생략)	제85조(벌칙) ----- ----- -----. 1. ~ 6. (현행과 같음) <u><삭제></u> 8. (현행과 같음)
제89조(과태료) ①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8. (생략) <u><신설></u> ③·④ (생략)	제89조(과태료) ② ----- ----- -----. 1. ~ 28. (현행과 같음) 29. <u>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 ③·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75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시설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³⁾,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선박 또는 사업장 출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민간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입법례로 「건설기계관리법」⁴⁾ 제35조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이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또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조사를 위하여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입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직원의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 대하여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선박안전법」

제75조(보고·자료제출명령 등)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1항 각 호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시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4)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보고·검사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또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1. 총괄기관
2. 한국교통안전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2항에 따른 직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한편, 개정안은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면서 과태료 상한도 1천만원 (벌금 기준)에서 5백만원으로 하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입장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건설기계 관리법」(3백만원 과태료) 등 유사행위 대비 과도한 점을 고려하여 부과 수준을 낮춘 것으로 보여짐.

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3조)

- 개정안은 선원명부 등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략) 9. 제153조를 위반하여 3년간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제177조(벌칙) ----- ----- -----. 1. ~ 8. (현행과 같음) <삭제>
제1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신설> ② ~ ④ (생략)	제179조(과태료) ① -----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153조를 위반하여 3년간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153조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선원명부, 선원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⁵⁾,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5) 「선원법」

제153조(서류 보존) 선박소유자는 선원명부, 선원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및 재해보상 등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선원명부 등 중요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않은 자에게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로 경제 형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로 「근로기준법」 6)에서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입장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현행법이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 「근로기준법」 대비 과도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취업규칙 등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라는 점 등을 들어 기존의 벌칙을 행정제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제9항, 제76조의3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 제7조)

- 개정안은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으나 앞으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3. 제38조에 <u>따른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u>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 6. (생략)	제56조(벌칙) ----- ----- ----- -. 1. 2. (현행과 같음) 3. ----- <u>따른</u> ----- ----- ----- -----
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58조(과태료) ① -----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38조에 <u>따른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②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58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⁷⁾.

그런데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은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설 출입·검사·수거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현행과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행정적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자료제출 명령 거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현행 규정을 조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출입·검사 및 수거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사업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시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 용기, 포장 또는 제조·영업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 용기 또는 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허에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
2. 제15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제34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품질관리의 준수 여부
- 3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및 유통기한 등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4. 제37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의무의 준수 여부

□ 이와 유사하게 「먹는물관리법」⁸⁾에서도 환경부장관은 국민건강상 위해 방지를 위해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입장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유사 입법례 대비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행정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상 다른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와의 형평성⁹⁾ 등을 고려할 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8) 「먹는물관리법」

제42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를 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 또는 냉·온수기나 정수기의 설치·관리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검사기관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물관련영업자,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정수기 설치·관리자 및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는 것

제6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해양심층수개발사업 개시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품질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품질관리인 등에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58조제1항)

2. 형량 조정

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4조)

- 개정안은 임원 등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향후 징역의 하한을 삭제하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임원 등의 배임) ① 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제43조제2항·제3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 제43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지배인(이하 “지배인”이라 한다) 또는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어떠한 종류나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여 조합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u>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제56조(임원 등의 배임) ① ----- ----- ----- ----- ----- ----- ----- ----- ----- ----- -- <u>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56조에 따르면 임원 등은 본인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여 조합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임원 등의 배임 행위에 대한 징역의 하한을 삭제하고, 벌금액수를 1억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낮추어 처벌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이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형법」 10)과 「상법」 11) 대비 과도한 형벌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취지임.

10)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상법」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①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안 제6조)

- 개정안은 수중레저사업자가 수중레저활동구역에 다른 선박 등이 해당 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결과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사용정지 또는 정비·원상복구 등 명령을 위반하거나, 수중레저장비·시설 등의 안전점검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중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으나 앞으로는 징역형을 폐지하고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 ----- <u>500만원</u>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30조에 따르면 수중레저기구의 안전점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개정안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비교적 낮은 경우에 징역형을 제외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경각심은 유지하되 경제활동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 대상 조문인 현행법 제30조는 수중레저사업자의 안전점검 등의 조치 의무 위반이나 영업 일시정지 명령 위반 등 수중레저 활동자의 안전과 관련되는 내용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입법취지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의 입장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중대한 위반 사항인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 운영이나 위험물질 반입·운송 행위 등은 현행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유지하되¹²⁾, 수중레저구역 표지 설치 미준수, 변경등록 미이행 등 비교적 중대성이 낮은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1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①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 의무 등) ③ 수중레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을 수중레저활동자가 타고 있는 수중레저 기구로 반입·운송하는 행위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중레저사업을 한 자

3. 제21조제3항제8호 또는 제9호를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3. 행정제재를 한 이후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안 제5조)

□ 개정안은 관리기관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관리기관의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7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8조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제37조(벌칙) 제3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같은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과태료) ①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9조(과태료) ① ----- ----- ----- -.
1. 2. (생략) <u><신설></u>	1.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18조제7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u> <u>다만, 제3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3. (생략) ② (생략) <u><신설></u>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8조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제4항----- ----- ----- -----.

- ☐ 현행법 제18조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관리기관)는 부실조합등에 대하여 임직원 등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 필요한 경우 해당 부실조합등의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과의 합병으로 존속하는 조합에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 참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¹³⁾. 또한, 제37조에 따르면 ① 관리기관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와 ② 관리기관의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형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조치를 먼저 시행한 후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제 형벌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먼저 ① 관리기관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1회 위반 시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과도한 형벌규정

13)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8조(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조합등에 대하여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밖의 제3자(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2. (생략)

②~⑥ (생략)

⑦ 관리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행사 또는 소송 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부실조합등의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⑧ 부실조합등과의 합병으로 존속하는 조합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조합에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 참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보임.

- 참고로, 이러한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 방식의 유사 입법례는 「외국환거래법」¹⁴⁾을 들 수 있음.

□ 이와 관련 관계부처의 입장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관리기관의 조사를 한 번 거부하더라도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기관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먼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 다음으로, 개정안은 ② 관리기관으로부터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 참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이와 관련 관계부처의 입장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현행법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등 다른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와 비교할 때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되 그 금액은 5백만원 이하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14) 「외국환거래법」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문 의 처
02)6788-5418